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43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김미애 · 서지영 · 성일종
이종배 · 강승규 · 김승수
김선교 · 박상웅 · 김정재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며,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그 설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상황임.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또는 언덕이나 협소하고 복잡한 도시공간인 곳이 많아 버스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3 신설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운용 의무)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노선버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류소에 노선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기준 및 대상과 운행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대중교통시설”을 “대중교통시설(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운영 의무)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노선버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류소에 노선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기준 및 대상과 운행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 ----- ----- ----- ----- ----- ----- -----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환승시설 등 <u>대중교통시설</u> 의 확충 · 개선	3. ----- <u>대중교통시설</u> (<u>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포함</u> <u>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제3호</u> <u>및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같</u> <u>다</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